

# 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- 불철주야 서울시를 위해 힘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주경야독 하시며 서울시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행정자치위원회 이 동 현 위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
-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 위원회기 더욱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.
- 본 조례의 제46조(위원회의 구성) 3항 2호를 보면 “어린이·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위원장, 부위원장 및 어린이·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선출된 2명의 어린이·청소년”이 어린이·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.

□ 그러나 어린이·청소년 인권위원회가 어린이·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선출된 인원들로 제한되어 선출된다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에 어린이·청소년 의회 의장과, 부의장도 후보에 넣어 형평성 있는 선출이 이루어지도록 일부개정 하였습니다.

□ 어린이·청소년 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다음세대 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.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위원 활동을 하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인권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□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

□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울시 다음세대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